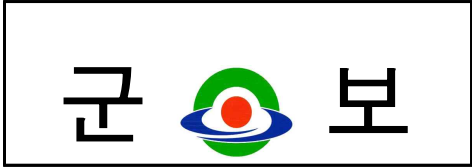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53호 2024. 8. 26.(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4-1283호)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285호)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289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예 천



1. 조례명 :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 의거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대상을 정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인력을 공급하여 관내 영농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대상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

- 공공형사업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개정(안 제6조)

- 기존 재정지원 항목 일부 삭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비용, 고용농가, 농업인 보험료 등 지원 항목 추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leeje270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농정과

3) 팩스 : 054-650-62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농정과(전화 : 054-650-69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용주”란”을 ““고용주”란 관내에서”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농업 경영가구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형사업자”란 프로그램(「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근로활동”을 “사업 추진”으로 한다.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에 필요한 비용 등
6. 고용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료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u>농업인 또는 농업법인</u> 등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고용주”란 관내에서 ----- ----- <u>농업 경영가구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사업자</u> ---. 3. “공공형사업자”란 프로그램 (「 <u>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u> 」)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u>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u> 을 말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재정지원) ----- ----- ----- ----- -----. 1.·2. (현행과 같음) 5. <u>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에 필요한 비용 등</u> 6. <u>고용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농</u>

3. <u>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4. <u>차량 임차료</u> 5. 그 밖에 <u>근로활동을 위하여</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업인 안전보험료 등</u> <u><삭 제></u> <u><삭 제></u> 7. ----- <u>사업 추진</u>----- ----- --
--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 및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

-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등 지급 및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시행
-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

나.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운영 등 규정 신설(안 제9조 ~ 제15조)

- 헌혈추진협의회 협의 사항 규정
- 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방법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faysh@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3) 팩스 : 054-650-64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전화: 054-650-8056)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 제목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예천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헌혈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인 경우에 한한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2.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1회 무료 시행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천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예천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헌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위원장을 총괄한다.

② 협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회의의 운영 등) ① 협회의의 위원장은 협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④ 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 ----- -----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예천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다음 각

<신 설>

<신 설>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헌혈자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인 경우에
한한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
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2.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
소 독감 예방접종 1회 무료 시
행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천군 포상 조
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
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단체 또는 공
공기관이 참여하는 예천군 헌혈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
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신 설>

방안

3.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
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
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
건소 헌혈 업무 담당 과장이 되
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중
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신 설>

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
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
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회의 운영 등) ① 협
의회의 위원장은 협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
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
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
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u><신 설></u> <u><신 설></u> <u>제9조 (생 략)</u>	<u>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u> <u>④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u> <u>제14조(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15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조정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u> <u>제16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원칙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 나.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예천군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제6조)
-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라.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방법(안 제9조 ~ 제12조)
- 마.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청구 및 열람 거절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 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안 제1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 홍보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un2randa@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홍보소통과

3) 팩스 : 054-650-60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홍보소통과(전화: 054-650-60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 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⑨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군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군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을 말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 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